

경기도 무인항공기·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100
발의일자 및 발의자	2018년 3월 2일, 박재순 의원 등 37명
상정일자	제327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(2018년 4월 10일 상정, 의결)
심사결과	수정가결
주요내용	○ 무인항공기·무인비행장치 관련 산업 육성에 국한된 기존 조례를 무인항공기, 무인비행장치, 자율주행자동차, 해양무인이동체 등을 모두 아우르는 “무인이동체” 관련 산업의 육성 조례로서 기능하게 개정함. ○ 상위법률의 개정에 맞춰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하기 위해 “무인이동체”의 정의를 수정

경제과학기술위원회

경기도 무인항공기·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8년 4월 10일
경제과학기술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8년 3월 2일, 박재순 의원 등 37명
- 나. 회부일자 : 2018년 3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327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
(2018년 4월 10일 상정, 검토보고, 질의/답변, 토론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박재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재 최첨단 유망 산업으로 무인항공기뿐만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, 해양 무인이동체 등도 각광받고 있는 상황임
- 이와 관련된 경기도 조례는 무인항공기·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산업 간 차등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무인이동체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이를 포함한 조례개정을 제안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제명을 경기도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(제명)
- “무인이동체”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“무인항공기 등”을 “무인이동체”로 수정함(안 제1조 ~ 제12조)

3. 검토보고의 요지(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: 김정문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----- [별첨 1]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음”

5. 토론요지 : “없음”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개정하고자하는 용어인 “무인이동체”의 정의에 “해양 무인이동체”를 포함하고 있으나, 관련 법령의 정비에 계획 중에 있는 바, 이를 제외하고 향후 법규 정비에 맞춰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음.

나. 수정 주요내용

- “자율주행자동차, 해양 무인이동체”를 “자율주행자동차”로 수정

※ 수정안 및 조문 대비표 ----- [별 첨 2]

8. 첨부서류

- 경기도 무인항공기·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(수정안 포함) ----- [별 첨 3]

경기도 무인항공기·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본 제정조례안은 2018. 3. 2. 교육위원회 박재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, 남경순·박근철 의원 등 37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8. 3. 5. 우리 위원회(의안번호 : 제2100호)에 회부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- 가. 현재 최첨단 유망 산업으로 무인항공기뿐만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, 해양 무인이동체 등도 각광받고 있는 상황임
- 나. 이와 관련된 경기도 조례는 무인항공기·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산업 간 차등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무인이동체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이를 포함한 조례개정을 제안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경기도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(제명)
- 나. “무인이동체”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다. “무인항공기 등”을 “무인이동체”로 수정함(안 제1조 ~ 제12조)

3. 검토의견

가. 주요 조문내용 검토

- 무인항공기·무인비행장치 관련 산업 육성에 국한되어 있던 기존 조례를 무인항공기, 무인비행장치, 자율주행자동차, 해양무인이동체 등을 모두 아우르는 “무인이동체” 관련 산업의 육성 조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임.
 - 최근 무인이동체 관련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2015년 251억 달러 규모의 무인이동체 시장이 2025년 1,537억 달러로 연평균 20%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¹⁾,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높고
 - 물류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고,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과 IT서비스 기업들이 무인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내는 등 무인이동체 관련 산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임.
 - 이에 무인항공기·무인비행장치에만 국한되어 산업 육성과 지원을 한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“무인항공기 등”의 용어를 “무인이동체”로 확장하여 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“무인이동체”의 정의에 따르면 “해양 무인이동체”를 포함하고 있으나, 해양수산부는 2020년까지 무인선의 인증 및 운항 등에 관련한 법규를 정비할 계획²⁾으로 있는 바, 향후 법규 정비에 맞춰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<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제2조 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무인이동체”란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스스로 이동하거나 원격조종에 의하여 이동하는 장치로서 무인항공기, 자율주행자동차, 무인농기계, 무인자율잠수정 등을 말한다.

16.12.21 배덕광 의원 대표발의,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

1) 김승민(2016). 무인이동체산업 분석 및 정책방향. 산업연구원

2) 과학기술정보통신부(2017).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

경기도 무인항공기·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18년 4월 10일

제안자 : 경제과학기술위원장

가. 수정이유

- 개정하고자하는 용어인 “무인이동체”의 정의에 “해양 무인이동체”를 포함하고 있으나, 관련 법령의 정비에 계획 중에 있는 바, 이를 제외하고 향후 법규 정비에 맞춰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음.

나. 수정 주요내용

- “자율주행자동차, 해양 무인이동체”를 “자율주행자동차”로 수정

경기도 무인항공기·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경기도 무인항공기·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
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호 중 “자율주행자동차, 해양무인이동체”를 “자율
주행자동차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무인항공기 등”이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(UAV, Unmanned Aerial Vehicle) 또는 무인이동체(U-MV, Unmanned Movable Vehicle)로써 명칭, 사용용도, 비행반경, 비행고도,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정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를 말한다. 2. “무인항공기 등 산업”이란 무인항공기 등을 제작·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. 1. “무인이동체”란 무인항공기, 무인비행장치, 자율주행자동차, 해양 무인이동체 등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필요시 원격조종으로 동작 가능한 이동체를 말한다. 2. “무인이동체 산업”이란 무인이동체를 ----- ----- 무인이동체를 ----- ----- ----- 산업----- ---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. 1. “무인이동체”란 무인항공기, 무인비행장치, 자율주행자동차 등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필요시 원격조종으로 동작 가능한 이동체를 말한다. 2. (개정안과 같음)

경기도 조례 제 호

경기도 무인항공기·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경기도 무인항공기·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경기도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무인이동체”란 무인항공기, 무인비행장치, 자율주행자동차 등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필요시 원격조종으로 동작 가능한 이동체를 말한다.
2. “무인이동체 산업”이란 무인이동체를 제작·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이동체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무인이동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 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무인이동체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.

② 도지사는 무인이동체의 운용과 무인이동체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③ 도지사는 무인이동체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·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제5조(무인이동체 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무인이동체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무인이동체 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
2. 무인이동체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
3. 무인이동체 사업자의 창업 ·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
4. 무인이동체 산업행사·기술개발·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
5. 무인이동체 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
6. 무인이동체 산업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
7. 무인이동체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
8. 무인이동체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
9. 그 밖에 무인이동체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도지사는 무인이동체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1년마다 수립·시행 한다.

④ 도지사는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1년마다 평가한다.

⑤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등) 도지사는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무인이동체 산업 관련 국제행사의 국내개최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
2.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
3.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학계·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
4. 무인이동체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
5.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제7조(전문인력 양성) ① 도지사는 무인이동체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이동체 산업과 관련된 대학·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·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안전교육) 도지사는 무인이동체의 조정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무인이동체 조정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
2. 무인이동체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
3.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이동체 관련하여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

제9조(실태조사) ① 도지사는 무인이동체 산업 관련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무인이동체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10조(무인이동체 산업지원) ① 도지사는 무인이동체 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에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국·공립 연구기관
2. 정부나 경기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·기업지원기관
3.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

② 수탁기관은 무인이동체 산업진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③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무인이동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정보 확산
2.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의 수립과 집행
3. 기술·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·교육
4. 개발인력 및 사용자 수요확산을 위한 인력 양성
5. 국내외 유관 산·학·연과의 교류·협력 업무
6. 그 밖에 무인이동체 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1조(법률지원) 도지사는 무인이동체 산업종사자의 무인이동체 개발·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12조(예산의 지원) 도지사는 무인이동체 관련 연구,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